

#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0,319,151	11,109,575
일반회계	344,828,366	10,344,851
특별회계	25,490,785	764,724
기타특별회계	25,490,785	764,724
상수도	12,192,734	365,782
의료보호사업	1,377,175	41,315
묘포장	89,426	2,683
주택사업	161,403	4,842
회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3,506,492	105,195
기반조성사업	43,863	1,316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7,035,750	211,073
기초생활보장기금	782,442	23,473
주민소득지원기금	301,500	9,04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17,91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344,851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